

국제표준 기록물 전거제어 기술규칙 초판과 개정판의 비교분석 연구

Comparative Analysis on the 1st Edition and the Revised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Authority Record for Corporate Bodies, Personal and Families

박 진 희(Jin-Hee Park)*

〈 목 차 〉

- | | |
|-----------------------|----------------------------------|
| I. 서 론 | 1. 개정배경과 목적 |
| II. 기록물 전거제어의 의의 | 2. 표준의 구조 및 사용원칙 |
| 1. 전거제어의 필요성 | 3. SAAR(CPF) 초판과 개정판의
내용 비교분석 |
| 2. 기록물 전거제어 레코드의 특징 | |
| III. ISAAR(CPF)의 개정내용 | IV. 결론 및 제언 |

초 록

본 연구는 국제표준 기록물 전거제어 기술규칙 초판과 개정판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기록물 전거제어의 필요성 및 전거제어 레코드의 특징, 각 기술규칙의 사용법 및 초판과 개정판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또한 실제 아카이브즈에서의 활용시 추가, 보완되어야 할 요소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우리나라 기록물 전거제어 기술규칙 제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제어: ISAAR(CPF), 전거제어, 기록물 전거제어, 전거레코드

ABSTRACT

This research aims at the thorough analysis between the first edition and the revised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Authority Record for Corporate Bodies, Personal and Families. The focused methods of the study are comparing with each strength and weakness of the first edition and the revised on the needs and the features of archival authority control as well as how to use its description rule. Besides it looks into the elements to be added and complemented as they are made practical use of archives, hereafter when it is established Korean archival authority control rules, this fundamental research can be certainly valuable as its basic materials.

Key Words: ISAAR(CPF), Authority Control, Archival Authority Control, Authority Record

* 천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july74@naver.com)

• 접수일: 2007년 2월 24일 • 최초심사일: 2007년 3월 5일 • 최종심사일: 2007년 3월 22일

I. 서 론

기록물에 대한 이용을 원활히 하고 효율적인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록물 기술에 대한 전거제어가 이루어져야 한다. ICA(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기록물에 대한 접근점의 형식과 내용을 제어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기록정보 시스템에 있어 전거제코드를 제어하기 위한 표준을 개발하였다. 1996년 초판 발행 이후 2004년 개정판이 발행되었다. 개정판은 미국 아카비스트 협회가 국제표준 기록물 전거제어 기술규칙(ISAAR(CPF)) :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Authority Record for Corporate Bodies, Personal and Families)의 개정을 위해 ICA/CDS(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Committee on Descriptive Standards)에 보낸 의견서의 비판을 수용하여 초판을 수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판은 먼저 ISAAR(CPF)와 ISAD(G)(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General))의 연계성면에서 취약한 점을 보완하여 기록물 기술과 전거제코드와의 연계요소 및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는 종합목록과 통합검색 시스템에서 기록물과 간행물을 통합하려는 추세를 염두 해 둔 것이다. 또한 전거제코드의 작성사례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환을 위해 EAC(Encoded Archival Context)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양립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ISAAR(CPF)의 개정판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기록물 기술 시스템과 다른 성격의 자원들, 예를 들어 서지자원, 박물관 자료의 기술, 텍스트, 이미지 등등의 모든 정보적 가치를 갖는 자원들간의 연계성이 중요하다. 이용자들은 광범위한 자료에 대한 정보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에게는 정보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원의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자료를 OneSearch를 통해 얻고자 한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개정된 ISAAR(CPF)의 기술규칙을 분석함으로써 도서관 자료와 기록물 자료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정보공개법'과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 기록물 관리와 이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기록물 전거제어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표준 기록물 전거제어 규칙인 ISAAR(CPF) 초판과 개정판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기록물 전거제어 규칙 제정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안하였다.

II. 기록물 전거제어의 의의

1. 전거제어의 필요성

전거제어는 특정 정보관리 시스템 내의 수많은 표목에 질서를 부여하는 수단이다. 구체적으로는 표준형식의 접근점을 선정하고 이와 상이한 형식간을 연결하여 특정 시스템에서 관련된 모든 자료를 검색하기 위한 과정이다.¹⁾

전거제어는 전통적인 목록의 검색기능과 집중기능과 관련이 있다. 전통적인 목록에 있어서 검색기능과 집중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은 표목 또는 접근점이다. 이러한 검색이나 집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록에 대한 전거제어를 통하여 표목이나 접근점이 통일적으로 표현되어야만 한다. 전거제어는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관련된 이름과 서명, 주제명을 함께 모아주고, 이용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탐색어와 목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어된 접근점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편목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거제어는 유일하고 일관성 있는 표목 또는 접근점으로부터 다양한 형식으로 된 변형에 대해 적절한 참조를 가능하게 해 주고 아울러 해당 편목규칙과 규칙에 해석에 따라 관련된 표목과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²⁾

기록물 기술에서 기록 생산자 및 생산기관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기록물 생산에 관한 배경정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명과 단체명을 포함한 생산자 정보를 서지파일과는 독립적인 전거파일 형태로 구축한다면 이는 상이한 접근점을 연결해 주는 전통적인 전거제어의 목적뿐만 아니라 생산 배경정보를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효과까지 성취할 수 있다. 이러한 전거파일은 해당 생산자와 생산기관의 기록물뿐만 아니라 관련 있는 생산자/생산기관의 기록물을 기술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³⁾

따라서 효율적인 검색과 상이한 접근점의 연결 및 기록물의 생산배경 정보를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거제어가 필요하다.

2. 기록물 전거제어 레코드의 특징

기록물 전거레코드와 도서관의 전거레코드는 유사하다. 그러나 ISAAR(CPF) 개정판에서 밝히고 있듯이 기록물 전거레코드는 더 많은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한다는 점

1) 설문원, “국제표준 기록물 전거제어 규칙 연구,” 지식처리연구, 제2권, 제2호(2001. 12), p.86.

2) Barbara B. Tillett, *Considerations for Authority Control in the Online Environment* (New York : The Haworth Press, 1989), p.2.

3) Fredric M. Miller, *Arranging and Describing Archives and Manuscripts* (Chicago :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1990), p.79.

이 다르다. 이는 기록물 전거레코드가 기록물 생산자에 대한 전거표목을 제공하면서 기록물에 대한 정보와 기록물 생산자에 관한 전거레코드 정보를 연결하여 이용자에게 직접 전거레코드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기록물 전거레코드를 직접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기록물을 생산하는 저자 즉 생산자가 변하기 때문이다. 기록물은 특정 개인이 정보를 알리기 위해 발간한 저작물이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된 결과이다. 따라서 기록물의 생산자는 단순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물을 생산, 관리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또한 기록물을 생산한 조직의 이름과 구조는 시간이 경과되면서 다양한 변화를 거듭하게 되어 기록물을 처음 생산하였던 생산자는 새로운 이름과 구조를 가지게 된다. 조직이 사라지는 경우에는 기록물은 관련된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어 관련된다. 그러므로 기록물 전거레코드는 생산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록물이 생산된 배경이나 일정 연원을 파악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가 기록물을 선별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⁴⁾

기록물 전거레코드와 도서관 전거레코드의 또 다른 차이점은 배경정보의 제공 측면에서 비롯된다. 전통적인 도서관 전거레코드에서는 기관명 변경과 관련하여 드물게는 인명이나 가문명 변경과 관련하여 주기에 기술된다. 이러한 주기는 보통 표목과 참조간의 관계가 복잡할 때 ‘보라’ 또는 ‘도보라’ 참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 가장 혼란 주기방식은 기관명과 변경날짜를 기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물군 또는 기록물 집서의 작성자와 관련된 배경정보는 단지 작성기관 및 작성자의 이름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록물 전거레코드에는 개인의 전기 정보나 단체의 행정약사가 삽입된다. 이러한 정보는 전거레코드에 담겨 기록물 시리즈나 기록물군 목록과 링크되거나 목록기술의 일부로 삽입되어 제공되기도 한다.⁵⁾

III. ISAAR(CPF)의 개정내용

1. 개정배경과 목적

1993년 11월, ICA의 기술표준위원회 소속 소위원회는 영국 리버풀에서 기록물 기술에 있어 접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소위원회는 접근점 형식과 내용을 제어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기록정보 시스템에 있어 이와 같은 제어를 위한 표준을 발전시킬 것을 계획하였다. 기록물 전거레코드에 관한 구체적인 표준을 발전시키면서 소위원회는 1970년, 1980년대의 Guidelines

4) 김명훈, 출처주의와 현대 기록관리(서울 : 한국국가기록 연구원, 2003), p.15.

5) 설문원, 전개논문, p.88.

for Authority and Reference Entries와 같은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이 수행한 국제 전거제어 코드 작업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미국에서 진행 중인 기록물 전거제어코드 관련 연구를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ISAAR(CPF)은 기술표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기록물의 접근점 형식과 내용을 제어하는 데에 필요한 표준을 논의하였고, 기록물 전거제어코드에 관한 구체적인 표준을 제안하였다. 이 초안은 1994년 10월 개최된 헤이그 기술 표준위원회 총회에서 논의되고, 수정, 보완되었으며 다시 1995년 11월 파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는 제안된 각 국의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확정, 출판하였다.⁶⁾

이후 ICA 기술표준위원회는 2000년에서 2004년까지 ISSAR(CPF) 개정에 착수하였다. ISAAR(CPF)2판은 ICA 기술표준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5년간의 개정작업 결과물이다. 국제기록물 위원회는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2000년 말 ICA의 모든 기관의 협회구성원과 ICA내의 다양한 관련조직과 동종의 국제조직에 메일로 공고하였으며 또한 ICA리스트와 기타 관련 이메일토론 리스트에도 이메일로 고지하였다. 1차적인 논의에 대한 마감시한은 2001년 7월 31일로 결정되었으며 2001년 8월까지 ICA/CDS 사무국은 국가위원회와 기관, 개인들이 제출한 18개 제안을 개정했다. 의견은 요약집으로 편집되어 2001년 10월 3일에 개최되는 브뤼셀 총회에 앞서 위원회 구성원 모두에게 배포되었다. 브뤼셀 총회에서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표준화되어야 할 개정에 대한 결정을 내려 개정초안을 만들었다. 이 초안은 위원회 구성원들에게 배부되었고, 2002년 6월 마드리드와 2002년 11월 히우지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수정되었다. 초안은 2003년 1월 ICA/CDS 웹사이트에 발표되었고, 개정표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2003년 오스트리아의 캔버라에서 열린 총회에서 검토되어 개정표준안에 대한 최종판이 승인, 2004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ICA의회에 출판된 형식으로 제출되었다.

ISAAR(CPF)2판은 초판을 확장, 재구성한 것이다. 1996년판은 세 영역 즉 전거제어영역, 정보영역, 주기영역으로 나뉜다. 반면에 개정판은 네 영역 즉, 식별영역, 기술영역, 연관영역, 제어영역으로 나뉜다. 연관영역과 제어영역은 신설된 것이다. 개정판에는 ISAD(G)를 포함하여 동종의 기록물 기술 및 기록물자료와 기타 자원과 기록물전거제어코드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⁷⁾

이 표준의 목적은 기록물의 생산 및 유지와 관련되어 있는 실체(단체, 개인, 가문)에 대한 기술을 제공하는 기록물 전거제어코드를 구축하기 위해 일반규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록물 전거제어코드는

6)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ISAAR(CPF) :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Authority Record for Corporate Bodies, Personal and Families(Ottawa : The Secretariat of the ICA Ad Hoc Commission on Descriptive Standards, 1996)*, Preface p.3.

7)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ISAAR(CPF) 2nd Edition :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Authority Record for Corporate Bodies, Personal and Families Second Edition, 2004*, [〈http://www.ica.org/biblio/ISAAR2EN.pdf〉](http://www.ica.org/biblio/ISAAR2EN.pdf) [cited 2006. 12. 27].

다음의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첫째, 단체명, 개인명 또는 가문명을 기록물 기술시스템 내의 단위로서 기술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둘째, 기록물 기술시 접근점의 생성과 이용에 대한 제어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셋째, 상이한 레코드 생산자간에 그리고 그러한 실체들간의 관련성을 기록하고, 생산자들의 레코드와 그들에 대한 다른 자원간의 관련성을 기록하기 위해서이다.⁸⁾ 레코드 생산자의 기술은 아키비스트들의 핵심적인 업무이다. 이는 레코드 생산 및 이용의 배경을 완전하게 기록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며 기록물과 레코드의 출처로서 가장 중요하다. 배경정보를 별도로 획득,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 이유는 다양하다. 여러 보존소가 동일한 생산자의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레코드의 기술과 레코드의 생산자 및 배경정보에 대한 기술을 연계시킬 수 있으며 해당 실체와 관련된 도서관 및 박물과 자료와 같은 기타 자원의 기술을 연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연계를 통해 레코드의 관리업무를 향상시키고 연구를 전자시킬 수 있다.⁹⁾

수많은 보존소들이 특정 출처로부터 수집한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고, 이때 출처에 관한 배경정보가 표준화된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이를 쉽게 공유하거나 링크할 수 있다. 배경정보를 공유하거나 링크시키는 것이 국경을 초월해서 이루어질 때 그러한 표준화는 국제적 관심사가 된다. 예를 들어 식민지화, 이민, 무역과 같은 행위 과정 속에서 남겨진 과거 및 현재 기록물들은 다국적 특성을 갖게 되며, 배경정보 교환을 위한 국제표준화를 촉구하는 요인이 된다.¹⁰⁾

기록물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표준은 기술이 창작 실체로서의 단체, 개인, 가문을 일관성 있고, 적절하며, 완결성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한다.¹¹⁾

기록물 전거래코드는 도서관 전거래코드와 유사하며 양자 모두 표준화된 접근점을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거래코드의 형식을 지닌다. 기술 단위의 생산자명은 접근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접근점은 명명된 실체를 분명하게 식별하기 위해 필수적인 한정어의 사용에 의존한다. 이를 통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른 실체간의 구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¹²⁾ 그러나 기록물 전거래코드는 도서관 전거래코드의 경우보다 더 많은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부가적인 요구사항은 기록물 기술시스템내에서 레코드 생산의 배경과 레코드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중요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처럼 기록물 전거래코드는 도서관 전거래코드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한다.¹³⁾ 그러므로 이 표준의 일차적인 목적은 레코드 생산자와 레코드 배경에 대한 기록물 기술을 표준화시키기 위한 일반 규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규칙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기록물과 레코드들은 다양하게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레코드의 기술과

8) *Ibid.*, 1.1-1.2

9) *Ibid.*, 1.5

10) *Ibid.*, 1.6

11) *Ibid.*, 1.7

12) *Ibid.*, 1.8

13) *Ibid.*, 1.9

연계될 수 있다. 또한 기록물과 레코드의 생산 및 이용배경을 이용자들이 이해하게 됨으로써 그 의미와 중요성을 더욱 잘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관내의 행정적 변화와 개인 및 가문의 환경상의 개인적 변화가 생겼을 경우, 다른 실체들 간의 관련성을 기술하여 통합시킴으로써 레코드 생산자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관,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을 교환할 수 있다.¹⁴⁾ 이러한 표준에 따른 기록물 전거레코드는 접근점으로 채택된 단체명, 개인명, 가문명의 형식을 제어하고, 식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2. 표준의 구조 및 사용원칙

이 표준에 따라 기록물 전거레코드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유형을 결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레코드를 기록물 전거시스템 내에서 전개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전거레코드에 포함된 정보요소의 내용은 기관이 따르는 규약이나 규칙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¹⁵⁾

기록물 전거레코드를 기술하기 위한 요소는 다음의 네 개 정보영역으로 나뉜다.¹⁶⁾

- (1) 식별영역 : 기술되고 있는 실체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주며, 레코드의 표준화된 접근점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 (2) 기술영역 : 실체의 속성과 배경, 활동에 대한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 (3) 연관영역 : 다른 단체, 개인, 가문과의 관계를 기록하고, 기술한다.
- (4) 제어영역 : 기관이 전거레코드를 생성, 유지하는 방법과 시기 그리고 그 기관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전거레코드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다.

이 표준에 제시된 규칙의 모든 요소들 가운데 다음 네 가지 요소 즉, 실체의 유형과 전거이름형식, 존재일자, 전거레코드식별자는 필수적인 요소들이다.¹⁷⁾

ISAAR(CPF)를 적용하고 있는 전거레코드의 기술요소들은 접근점으로 사용될 것이다. 접근점을 표준화하기 위한 규칙과 협약은 국가별 또는 각 언어별로 개발될 수 있다. 요소들의 데이터 내용을 생성하고 선택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어휘와 협약 또한 국가별·언어별로 개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표준은 다음과 같으며 특히 출판된 자료를 인용할 때는 ISO690의 최신판을 따르면 된다.¹⁸⁾

14) *Ibid.*, 1.10

15) *Ibid.*, 4.1

16) *Ibid.*, 4.4

17) *Ibid.*, 4.7

18) *Ibid.*, 4.9

ISO 5963 Documentation - Methods for examining documents, determining their subjects, and selecting indexing ter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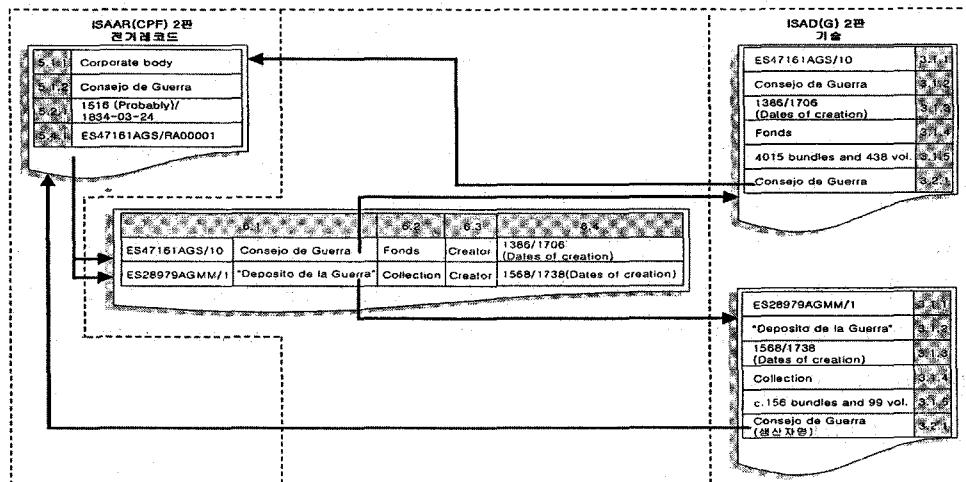
ISO 2788 Documentation -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monolingual thesauri.

ISO 5964 Documentation -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multilingual thesauri

ISO 999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Guidelines for the content, organization and presentation of indexes

ISO 690 Documentation - Bibliographic references - Contents, form and structure

이 표준은 ISAD(G)와 연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따라서 기록물 기술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서 두 개의 표준이 사용될 때, 전거래코드는 기록물 기술과 연계될 수 있다.¹⁹⁾ 기록물 전거래코드는 일차적으로 레코드 생성의 배경을 기록하기 위해 만들어지며 이러한 문헌이 유용하기 위해서는 전거래코드와 레코드의 기술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전거래코드는 기타 관련 정보자원과도 연계될 수 있다. 연계되었을 때는 기관, 개인, 가문과 연계된 자원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기술이 중요하다. 기록물 기술시스템의 정황에서 생성되는 관련성은 <그림 1>과 같다.²⁰⁾



<그림 1> ISAAR(CPF)의 기록물 전거래코드와 ISAD(G)2의 기록물 기술과의 연계성
출처 : Subdirección General de los Archivos Estatales, Archivo General de Simancas, Spain 2003.

19) *Ibid.*, 4.11

20) *Ibid.*, 6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ISAAR(CPF)2판 전거레코드와 ISAD(G)2판 기술요소는 연계될 수 있다. 그림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Consejo de Guerra 생산자의 기록물 기술 레코드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 ISAD(G)의 필수요소는 식별기호, 표제, 생산일자, 기술계층, 기술규모 요소 등 다섯 개이다. 먼저 첫 번째 기록물의 경우, 식별기호는 ES47161AGS이며 표제는 Consejo de Guerra, 생산일자는 1386년에서 1706년, 기술계층은 폰드, 기술규모는 4015 묶음과 438권이다. 두 번째 기록물의 식별기호는 ES28979AGMM/1, 표제는 “Deposito de la Guerra”, 생산일자는 1568년에서 1738년, 기술계층은 컬렉션, 기술규모는 156 묶음과 99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Consejo de Guerra를 전거명으로 하는 기록물 전거레코드의 요소는 전거유형, 전거명, 존속기간, 식별기호 요소이다. 전거대상은 단체이며 전거명은 Consejo de Guerra, 존속기간은 1516(추정)에서 1834년 3월 24일, 전거레코드 식별기호는 ES47161AGS/RA00001이다.

Consejo de Guerra 전거명에 대한 전거레코드의 요소는 연관정보원과 연계될 수 있다. 첫 번째 기록물의 경우, 식별기호 ES4716AGS/10, 표제 Consejo de Guerra, 관련자료 유형 폰드, 관련일자 1386-1706 요소를 기술한다. 두 번째 기록물의 경우에는 식별기호 ES28979 AGMM/1, 표제 “Deposito de la Guerra”, 관련자료의 유형은 컬렉션, 관련일자는 1568-1738년 요소를 기술한다.

이처럼 ISAD(G)는 전거레코드의 전거명인 생산자요소를 통해 ISAAR(CPF)와 연계되고, ISAAR(CPF)는 기술레코드의 식별기호와 표제를 통해 ISAD(G)로 연결이 가능하게 된다.

ISAAR(CPF) 개정판에서는 연관정보를 기록할 때 서술형식이나 구조화된 형식으로 기록할 있으며, 이때 네 개의 요소들과 자원과의 연계성이 명시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²¹⁾

- (1) 관련자원의 식별자와 표제 - 관련자료를 유일하게 식별하고, 그 자료에 대한 기술과 전거레코드가 명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소이다. 관련자원의 고유식별자/참조코드, 표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 (2) 관련자료의 유형 - 참조된 관련자료의 유형을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기록물(폰드, 레코드, 시리즈 등), 기록물 기술, 검색보조도구, 단행본, 저널기사, 사진, 박물관 자료, 문헌필름, 구술역사기록 등으로 나타낸다.
- (3) 관련성 - 기관, 개인, 단체와 관련자원간의 관련성을 기술하기 위한 요소이다. 창작자, 저자, 주체, 보관자, 저작권소유자 등으로 나타낸다.
- (4) 관련자료 또는 관련일자 - 기관, 개인, 가문과 관련된 자료간의 관련일자 그리고 관련자료에 대한 특정 일자를 제시하기 위한 요소이다.

21) Ibid., 6.1-6.4

이 표준은 기록물 전거정보의 교환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의 일부분만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성공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보존소에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형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EAC는 월드와이드웹을 통해 ISAAR(CPF)에 따르는 전거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포맷의 하나이다. 현재 EAC는 XML과 SGML 형식의 DTD 형식으로 개발되고 있다.²²⁾

3. ISAAR(CPF) 초판과 개정판의 내용 비교분석

ISAAR(CPF) 초판은 전거제어영역, 정보영역, 주기영역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반면 개정판은 크게 식별영역, 기술영역, 연관영역, 제어영역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초판과 개정판의 기술요소를 매핑시켜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ISAAR(CPF) 초판과 개정판의 기술요소 매핑

초판		개정판	
번호	기술요소	번호	기술요소
1.1.	식별코드	5.4.1	전거레코드 식별자 및 기관식별자
1.2	레코드유형	5.1.1	기입유형
1.3	전거표목	5.1.2	전거명
1.4	대등표목	5.1.3	대등명
1.5	비우선어	5.1.5	기타 명칭
1.6	관련표목	5.3	연관영역
2.1.1	법적번호	5.1.6	기관 고유식별자
2.1.2	명칭	5.1.4	기타 규칙의 표준명
2.1.3	존속일자, 장소	5.2.1/ 5.2.3	존속일자, 장소
2.1.4	주요활동지역	5.2.3	장소
2.1.5	법적상태	5.2.4	법적상태
2.1.6	권한, 기능, 활동	5.2.5/5.2.6	기능, 직업, 활동/ 계약전거출처
2.1.7	행정구조	5.2.7	내부구조/계보
2.1.8	연관정보	5.3	연관영역
2.1.9	기타 주요정보	5.2.8	일반적 배경
2.2.2	이름	5.1.4	기타 규칙에 따른 이름의 표준형식
2.2.3	생몰일, 거주지	5.2.1/5.2.3	생몰일/ 장소
2.2.4	거주지	5.2.3	장소
2.2.5	국적	5.2.2	이력
2.2.6	직업 및 활동영역	5.2.5	직업, 활동
2.2.8	연관정보	5.3	연관영역
2.2.9	기타 주요정보	5.2.8	일반적 배경
2.3.2	가문명	5.1.4	기타 규칙에 따른 이름의 표준형식
2.3.3	존속일자, 장소	5.2.1/5.2.3	존속일자/ 장소

22) Ibid., 4.13

〈표 1〉 ISAAR(CPF) 초판과 개정판의 기술요소 매핑 (계속)

초판		개정판	
번호	기술요소	번호	기술요소
2.3.4	거주지 및 지역	5.2.3	장소
2.3.5	국적	5.2.2	이력
2.3.6	기업·가문의 활동영역	5.2.5	기능, 직업, 활동
2.3.7	가계도	5.2.7	내부구조 및 가계
2.3.8	연관정보	5.3	연관영역
2.3.9	기타 주요정보	5.2.8	일반적 배경
3.1.	아카이스트 주기	5.4.8/5.4.9	출처, 관리주기
3.2	규칙 및 협약	5.4.3	규칙 및 협약
3.3	작성일자	5.4.6	생성·수정·삭제일자

각 영역별 요소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비교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식별영역

식별영역은 기술되고 있는 실체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주며, 레코드의 표준화된 접근점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식별영역의 요소는 기입유형, 전거명, 대명, 기타 규칙의 표준명, 기타 명칭, 기관식별자 등 6개 요소로 나뉜다.

본 영역의 요소에 해당하는 초판의 영역별 요소는 〈표 2〉와 같다.

〈표 2〉 개정판의 식별영역 요소와 초판의 영역별 요소

초판		개정판	
영역	요소	영역	요소
전거제어영역	레코드유형	식별영역	기입유형
전거제어영역	전거표목	식별영역	전거명
전거제어영역	대등표목	식별영역	대등명
—	—	식별영역	기타 규칙의 표준명
정보영역	명칭, 이름, 가문명	식별영역	기타 명칭
정보영역	법적번호	식별영역	기관식별자

(1) 기입유형

이 요소는 기입되는 대상이 단체, 개인 또는 가문 중에 어떤 것에 대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표시한다. 전거레코드에 기입 대상의 유형 즉 단체, 개인, 가문을 명시한다.

초판에서는 단체명의 경우 “이름 : 단체”, 인명의 경우 “이름 : 개인”으로, 가문명의 경우 “이름 : 가문”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1.2). 그러나 개정판의 적용사례에서는 “이름 :” 도입어구를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있지 않다.

(2) 전거명

단체, 개인, 가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인가된 접근점을 생성하기 위한 요소이다. 단체명, 인명, 가문명을 그 기관이 채택한 국가협약 또는 국제협약이나 규칙에 맞게 인가된 기입형식명으로 기록한다. 이때 적용된 규칙에 대해서는 규칙 및 협약(5.4.3)에서 표시한다.

본 요소에 해당하는 초판의 기술요소는 표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개정판에서는 이 용어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초판과 개정판의 규칙은 동일하며 다만 초판에서는 '표준화된(standardized)'이란 어구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개정판에서는 '인가된(authorized)'로 표현하고 있다.

(3) 대등명

전거명이 다른 언어나 다른 문자로 나타날 때, 다양한 형식을 지시하기 위한 요소이다. 당해 기관이 채택한 국가적 또는 국제적 협약이나 규칙에 맞게 대등명을 표시한다. 이때 각 협약이나 규칙이 요구하는 하위요소나 한정어를 포함한다. 어떤 규칙이 적용되었는지는 규칙 및 협약(5.4.3)에서 표시한다.

초판에서는 대등표목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으나 개정판에서는 대등명으로 요소명을 변경하였다.

(4) 기타 규칙의 표준명

이 요소는 개정판에서 신설된 요소 중 하나이다. 전거명 외에 다른 규칙에 따라 생성된 기관명, 개인명, 가문명을 표준화된 이름 형식으로 지시하기 위한 요소이다. 이를 통해 상이한 전문집단간의 전거레코드 교환이 촉진될 수 있다. 다른 협약이나 규칙에 따라 기술된 실체의 표준명을 기록하며 이미 표준명이 제정된 기관명의 경우에는 그 규칙과 이름을 명시한다.

(5) 기타 명칭

식별영역에서 사용되지 않은 기관, 개인, 단체에 대한 기타 이름을 명시하기 위한 요소이다. 다음과 같이 실체로서 알려지지 않은 기타 이름을 기록한다.

- 1) 동일한 이름의 다른 형식, 예를 들어 두문자어
- 2) 기관명의 다른 이름, 예를 들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이름, 이 경우 이름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실체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연관영역(5.3)의 일시적인 관련성요소에서 실체간의 관련성을 기록해야 한다.
- 3) 이명, 예를 들어 가명, 처녀시절 이름 등을 포함한 시간에 따른 변화된 이름
- 4) 이름과 이름 앞뒤에 붙는 직함, 예를 들어 개인이 갖고 있는 귀족명, 작위명 등

수작업 시스템에서 이 요소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라참조(SEE reference)를 이용하여 전거명과 상호참조 되도록 해야 한다.

초판에서는 정보영역의 단체명(2.1.2), 개인명(2.2.2), 가문명(2.3.2) 요소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6) 기관 식별자

기관을 식별하기 위해 숫자 또는 숫자-문자혼합의 식별자를 제시하기 위한 요소이다. 공식적인 기관번호나 기타 식별자(회사승인번호)를 기록하며 기관 소재지인 관할구역 및 약도를 덧붙인다.

초판에서는 법적번호(2.1.1)로 해당요소를 명칭하고 있으며 개정판과는 달리 기관 소재지인 관할구역 및 약도를 덧붙이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다.

나. 기술영역

기술영역은 단체, 개인 및 가문의 역사, 역할, 배경, 활동을 기술하기 위한 부분이다. 본 영역에 해당하는 개정판의 요소는 존속일자, 내력, 장소, 법적지위, 업무·직업·활동, 위임 및 권한출처, 내부구조 및 가계도, 일반배경 등 8개 요소이다.

존속일자(5.1.2) 요소는 단체, 개인, 가문의 경우 각각 개별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장소, 법적지위, 업무·직업·활동, 위임 및 권한출처, 내부구조 및 가계도, 일반배경요소에 명시된 정보는 내력요소에 각각 체계적으로 서술형으로 기록할 수 있다.

본 영역의 요소에 해당하는 초판의 영역별 요소는 <표 3>과 같다.

<표 3> 개정판의 기술영역 요소와 초판의 영역별 요소

초판		개정판	
영역	요소	영역	요소
정보영역	존속일자, 장소 생몰일 및 거주지 존속일자, 장소	기술영역	존속일자
정보영역	국적	기술영역	역사
정보영역	존속일자, 장소/주요활동지역 생몰일 및 거주지/ 거주지 및 지역 존속일자, 장소/거주지 및 지역	기술영역	장소
정보영역	법적지위	기술영역	법적지위
정보영역	사명, 기능, 활동 등 직업, 활동 기업, 가문의 활동영역	기술영역	업무, 직업, 활동
정보영역	권한, 기능, 활동	기술영역	위임·권한 출처
정보영역	행정구조/가계도	기술영역	내부구조 및 가계도
정보영역	기타 주요정보	기술영역	일반배경

(1) 존속일자

기관, 개인, 가문의 존속일자를 지시하기 위한 요소이다. 기관의 경우, 설립, 해체, 근거법률제정 등과 관련된 일자를 표시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생몰년을 표시하나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활약기간을 표시한다. 날짜를 대등 기입시스템으로 표현하고 있는 곳에서는 국가협약이나 규칙협약에 따라 동일한 형식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때 사용한 날짜 시스템을 규칙 및 협약(5.4.3)에서 표시한다.

초판에서는 개정판의 존속일자요소를 존속기간, 장소(2.1.3), 생몰일 및 거주지(2.2.3), 존속일자, 장소(2.3.3)에서 기술하며 날짜표기체계를 아키비스트 주기(3.1)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력

단체, 개인, 가문에 대한 간략한 이력을 제시하기 위한 요소이다. 기입되는 대상의 주요사건, 활동, 업적, 역할을 서술형식으로 또는 연대기적으로 기록한다. 여기에는 성별, 국적, 가족 및 정치, 종교관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가능하면 관련일자를 포함한다.

초판에서는 이 요소를 개인과 가문의 하위요소인 국적(2.2.5/ 2.3.5)에서 국적, 시민권 등 관련사실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장소

단체, 개인, 가문이 소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또는 기타 다른 관련성이 있는 주요장소와 관할지역을 지시하기 위한 요소이다. 주요 장소와 관할지역을 실체와 관련 있는 포함일자 및 속성과 함께 기록한다.

초판에서는 개인의 경우, 생몰일 및 거주지(2.2.3), 거주지 및 지역(2.2.4) 요소에 기록하고 있으며, 가문의 경우에는 존속기간, 장소(2.3.3)에, 거주지 및 지역(2.3.4)에, 단체는 존속일자, 장소(2.1.3), 주요활동지역(2.1.4) 요소에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4) 법적지위

기관의 법적 지위를 지시하기 위한 요소이다. 법적지위와 이러한 상태가 적용된 포함일자를 함께 기술한다.

초판의 법적지위(2.1.5) 요소와 동일하다.

(5) 업무, 직업, 활동

권한, 직업, 활동을 지시하기 위한 요소로서 이러한 활동범위와 포함일자를 기록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능, 직업, 활동의 특성에 대해 기술한다.

초판은 이 요소를 권한, 기능과 활동의 범위(2.1.6), 직업 및 활동영역(2.2.6/2.3.6) 요소에서 다

루고 있으며 규칙은 개정판과 동일하다.

(6) 위임 및 권한출처

기관, 개인, 가문의 활동, 책임, 업무를 수행할 때 부여된 권한에 대한 출처를 지시하기 위한 요소이다. 출처와 함께 권리가 위임되었거나 변경된 관할지역과 포함일자를 함께 기록한다.

초판의 권리 · 기능과 활동의 범위(2.1.6) 요소명에는 ‘권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개정판과 같이 출처를 지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개정판에서는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가문까지도 확대하여 그 출처를 지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내부구조 및 가계도

기관의 내부행정구조 또는 가문의 가계도를 기술하고 나타내기 위한 요소이다. 기관 및 기관의 업무 수행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내부구조와 주요 변경일자를 기술한다. 가문의 가계도는 가족 구성원들의 내부적인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포함일자와 함께 기술한다. 개인에 대해 기술할 때에는 가계도에 대한 정보를 이력요소(5.2.2)와/또는 연관영역(5.3)에 기술할 수 있다.

초판의 행정적 구조(2.1.7)와 가계도(2.3.7) 요소와 동일하나 개정판과 같이 개인 전거레코드의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8) 일반배경

단체, 개인, 가문이 운영, 활동했을 시기의 종교, 사회, 경제,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기 위한 요소이다.

초판에서는 기타주요정보(2.1.9/2.2.9/2.3.9)라는 요소만 채택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규칙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 연관영역

연관영역은 전거레코드에 기술될 수 있는 기타 단체, 개인, 가문과의 관련성을 기술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판에서 신설된 영역이다. 초판의 연관정보요소와 관련이 있으나 개정판에서는 세분화하여 요소를 정의하고 있다. 이 요소를 통해 전거시스템은 폰드와 생산자의 관계를 관리하는데만 한정되지 않고 생산자를 중앙에 놓음으로써 다양한 생산자간의 복잡한 연계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연구자들은 그 연계성을 단서로 탐색과정의 관련정보를 통해 다양한 생산자가 생산해낸 내부의 기록물과 문서들을 확인하고 찾을 수 있다.²³⁾

23) Stefano Vitali, *The Second Edition of ISAAR(CPF) and Authority Systems for Archival Descriptive Systems*, <http://www.unifi.it/universita/biblioteche/ac/relazioni/vitali_eng.pdf> [cited 2007. 2. 1].

초판에서는 정보영역의 연관정보요소에서 단체는 다른 단체, 가문, 개인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기록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는 관계의 유형과 해당날짜들과 함께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 관련 단체명, 개인명, 가문명 또는 식별자

연관된 실체의 전거레코드 식별자를 포함하여 전거명과 관련 식별자를 기록한다.

수작업 시스템에서는 이 요소를 도보라 참조(see also references)를 사용하여 전거명과 상호참조 되도록 해야 한다.

(2) 관련성 범주

기입대상 실체와 기타 단체, 개인, 가문과의 관련성의 범주를 지시하기 위한 요소로서 개정판에서 신설된 요소이다. 국가규칙, 협약에 따라 일반적인 범주를 기술하거나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범주로 기술한다. 이때 관련성을 기술하기 위해 제어어휘의 출처로 사용한 분류법은 규칙 및 협약요소(5.4.3)에 기록한다.

a) 계층적 관계(상위/종속, 제어/지배, 소유자/피소유자)

계층적 관계에서 어떤 실체는 권한이나 제어를 행사할 수도 있고, 종속될 수도 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합병될 수도 있다.

b) 일시적 관계(전임자/후임자)

일시적 관계에서 어떤 실체가 권한 및 활동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계승하거나 계승받을 수도 있다.

c) 가문

가문에서 어떤 사람은 다른 가문의 사람 및 그 가문과 광범위한 관련범주를 가질 수도 있다. 가문의 가계도가 복잡할 경우 각 구성원에 대해 각각의 전거레드를 생성하고, 부모, 배우자, 자녀들과 연계시킬 수 있다. 대안으로는 이 정보를 내부구조/가계도(5.2.7)에 기록할 수 있다.

d) 연합

연합관계는 상기의 관계에 포함되지 않는 관계범주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공급자/고객, 구성원, 부분/전체, 사업관계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관련성 기술

관련성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기 위한 요소이다. 전거레코드에 기술되는 실체와 기타 관련실체 간의 관계의 속성을 정확하게 기술한다. 예를 들어 상위기관, 하위기관, 소유자, 전임자, 남편, 아내, 아들, 사촌, 스승, 대학동료, 학생 등으로 표시한다. 관련성을 기술할 때 제어어휘의 출처로써 사용한

분류법은 규칙 및 협약(5.4.3)에 기록한다. 서술형식으로 역사요소(5.2.2)와 관련성 범위요소(5.3.2)를 이 요소에 기술할 수 있다.

(4) 관련일자

기타 기관, 개인, 단체와의 관련기간 일자를 기술하기 위한 요소이다. 관계 개시일자나 계승일자, 적절할 경우, 관련 휴지기간 등을 기록한다. 대등 날짜체계를 사용했을 때에는 규칙 및 협약(5.4.3)에 기록한다.

라. 제어영역

제어영역은 기관이 전거래코드를 생성, 유지하는 방법과 시기 그리고 그 기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여 전거래코드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영역이다. 제어영역에 해당하는 요소는 전거래코드 식별자, 기관식별자, 규칙 및 협약, 현황, 상세도, 작성 · 수정 · 삭제일자, 언어 및 자체, 출처, 유지주기 등 9개 요소이다.

본 영역의 요소에 해당하는 초판의 영역별 요소는 〈표 4〉와 같다.

〈표 4〉 개정판의 기술영역 요소와 초판의 영역별 요소

초판		개정판	
영역	요소	영역	요소
전거래영역	식별코드	제어영역	전거래코드 식별자
—	—	제어영역	기관식별자
주기영역	전거기록 작성에 사용한 국가적 또는 국제 규칙 및 협약	제어영역	규칙 및 협약
—	—	제어영역	현황
—	—	제어영역	상세도
주기영역	전거기록의 작성일자	제어영역	작성 · 수정 · 삭제일자
—	—	제어영역	언어 및 자체
주기영역	아카비스트 주기	제어영역	출처
주기영역	아카비스트 주기	제어영역	유지주기

(1) 전거래코드 식별자

전거래코드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요소로서 지역협약 또는 국가협약에 따라 고유 레코드 식별자를 기록한다. 전거래코드가 국제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ISO 3166 국가명 표현코드 최신판을 이용하여 국가코드를 기록한다. 전거래코드의 작성자가 국제기관일 경우에는 국가코드 자리에 기관식별자를 제시한다.

본 요소는 초판의 식별코드(1.1) 요소와 동일하다.

(2) 기관식별자

전거레코드 작성에 책임이 있는 기관을 식별하기 위한 요소로서 개정판에서 추가되었다. 전거레코드를 작성, 수정, 배포하는데 책임이 있는 기관을 전거명으로 기록한다. 대안으로 국가기관 코드나 국제기관 코드에 따라 기관별 코드를 기록할 수 있으며 기관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 식별체계에 대한 참조를 포함시킨다.

(3) 규칙 및 협약

기록물 전거레코드를 작성할 때 적용한 국가적 또는 국제적 협약 및 규칙을 지시하기 위한 요소이다. 적용된 규칙 및 협약의 출판일자나 판차사항을 이름과 함께 명시한다. 전거 이름형식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했던 규칙은 따로 명시한다. 본 요소에는 전거레코드에서 일자를 명시하기 위해 사용했던 날짜체계에 대한 참조도 포함된다.

이 요소의 기입과 관련된 기타 요소들은 전거명(5.1.2), 대등명(5.1.3), 생몰일(5.2.1), 관련성 범주(5.3.2), 관련성 기술(5.3.3), 관련일자(5.3.4), 작성·수정·삭제일자(5.4.6) 요소이다.

본 요소는 초판의 전거기록 작성에 사용한 국가적 또는 국제규칙 및 협약(3.2) 요소에 해당된다. 초판에서는 협약명과 규칙명만을 기입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4) 현황

본 요소는 개정판에서 추가된 요소로 이용자가 전거레코드의 현재 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거레코드의 초안상태를 지시하기 위한 요소이다. 레코드가 초안중인지, 완성, 개정, 변경되었는지에 대해 지시한다.

(5) 상세도

전거레코드가 최소수준인지 부분 또는 완전수준으로 작성되었는지 지시하기 위한 요소이다. 관련 국제 및 국가 안내서 또는 규칙에 따라 상세도를 기술한다. 이러한 규칙이 없을 경우, 최소수준의 레코드는 네 가지 필수요소만으로 작성된 레코드를 의미하며 완전수준의 레코드는 개정판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6) 작성·수정·삭제일자

전거레코드의 작성일자, 수정일자, 삭제일자를 기술한다. 일자를 기술할 때 사용한 날짜체계에 대해서는 규칙 및 협약(5.4.3) 요소에 기록한다.

본 요소는 초판의 전거기록의 작성일자(3.3) 요소와 동일하다.

(7) 언어 및 문자

전거레코드를 작성할 때 사용한 언어 및 문자를 기술한다. 이때 언어에 대해서는 ISO 639-2 언어 코드를, 문자에 대해서는 ISO 15924 자체명의 표현코드를 참조한다.

(8) 출처

전거레코드를 작성할 때 참조한 출처를 지시하기 위한 요소로써 그 출처를 기록한다.
초판의 아키비스트 주기(3.1) 요소에 해당한다.

(9) 유지주기

전거레코드의 생성과 변경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요소로서 이와 관련된 주기를 기록한다.
전거레코드 작성자명을 여기에 기록할 수 있다.

초판의 경우 개정판의 출처와 유지주기 요소를 아키비스트 주기(3.1)에서 통합하여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IV. 결론 및 제언

ISAAR(CPF)2판과 1판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판은 전거명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2판은 실체에 대한 기술을 관리하기 위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즉 초판은 생산자의 구조와 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표준화된 생산자 표목을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2판은 기록물의 생산자인 실체를 기술하고, 기록물 자료에 대한 배경정보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 1판은 전거기입간의 관련성을 보라참조와 도보라 참조를 통해 주로 관리하는 반면 2판은 해당 생산자와 다른 단체, 개인, 가문과의 관련성을 제시하기 위해 새로운 영역을 설정하였다. 이 영역에 포함되는 요소는 관련단체명·개인명·가문명 또는 식별자, 관련성 범주, 관련성 기술, 관련일자 요소 등이다. 이 요소를 통해 전거시스템은 폰드와 생산자의 관계를 관리하는데만 한정되지 않고 생산자를 중앙에 놓음으로써 다양한 생산자간의 복잡한 연계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연구자들은 그 연계성을 단서로 탐색과정의 관련정보를 통해 다양한 생산자가 생산해낸 내부의 기록물과 문서들을 확인하고 찾을 수 있다.

셋째, 2판에서는 전거레코드와 기록물 기술의 연계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1판에서는 기록물 기술과 전거레코드와의 연계요소 및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판에서는 연관정보 요소 즉 관련자료의 식별자와 표제, 관련자료의 유형, 관련성, 관련자료 및 관련일자요소를 기술

하여 기술자료와 상호연결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넷째, 1판의 세 영역 즉, 전거제어영역, 정보영역, 주기영역은 식별영역, 기술영역, 연관영역, 제어영역 등 네 영역으로 바뀌었다. 연관영역과 제어영역은 2판에서 신설된 영역이며, 초판의 정보영역의 요소들은 2판의 식별영역의 요소로 흡수되었다. 이로써 전거명을 포함하여 전거대상에 사용된 명칭을 식별영역에서 모두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1판의 정보영역에서 제시된 전거대상 유형에 따른 24개의 기술요소는 2판의 기술영역에서 8개의 기술요소로 통합되었다. 1판에서 제시된 24개의 기술요소는 전거대상 유형별로 명칭을 달리하여 나열한 요소들이다. 2판에서는 전거대상별로 구분하지 않고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8개의 기술요소를 제시하여 기술영역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여섯째, 1판의 관련전거표목과 정보영역의 연관정보요소들은 2판의 연관영역에 통합되었다. 2판의 연관영역에서는 관련단체명·개인명·가문명 또는 식별자, 관련성 범주, 관련성 기술, 관련일자요소 등 4개 요소를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일곱째, 1판의 '표목'이라는 요소명칭을 삭제하였다. 전거표목, 대등표목, 관련표목 요소들은 전거명, 대등명, 연관영역 등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명칭변경은 온라인 환경으로 바뀌면서 검색과정에서 접근점의 기능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표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1판의 존속기간 및 장소요소를 2판에서는 존속기간과 장소로 구분하여 독립된 기술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1판의 주기영역의 대부분 요소들은 2판의 제어영역으로 흡수되었으며 신설된 요소는 현황, 상세도, 언어 및 문자 요소 등이다.

한편, Teresa Doherty는 실제 현장에서 ISAAR(CPF)를 적용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과 보완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²⁴⁾

첫째, 기술영역의 이력요소의 경우, 서술형식으로 기술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미국의 일부 기록보존소에서는 주요일자를 기재할 수 있는 왼쪽 공간과 함께 표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온라인 환경에서 스크롤바가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둘째, 기술영역의 기능, 직업, 활동요소는 이력요소와 중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요소는 특정 기능이나 위임책임 특히 이에 대한 정보가 명확할 경우에만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특정시기의 업무변화에 대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셋째, 일반배경 요소의 경우 실체들 간에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단일 기업의 경우, 예를 들어 2차 전쟁, 일반파업, 산업혁명 등 동일할 수 있다.

넷째,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ISAAR(CPF)개정판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 필드는 '성별'과 '출판저작물'요소로 데이터 교환시에는 이력요소에 포함된다. 또한 실체가 단체일

24) Teresa, Doherty, "Who, What, When, Why? ISAAR(CPF) - the Forgotten Standard?," *Business Archives Council and Contributors*, Vol.87(2004), pp.61-75.

경우, 기업규모에 대한 요소가 유용하다.

Teresa Doherty가 제시하고 있듯이 우리나라 기록물 전거레코드 기술규칙 제정시 ISAAR(CPF)의 기본틀을 참조하되 각 보존소의 실무경험과 이용자의 요구를 통해 기술요소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중복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서관 자료와 기록물의 통합관리를 위해 MARC21과 KORMARC의 전거제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네트워크를 통해 기록물 기술 레코드 및 전거레코드 교환이 가능한 EAD(Encoded Archival Description)와 EAC의 상호운용성 측면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명훈. 출처주의와 현대 기록관리. 서울 : 한국국가기록 연구원, 2003.
- 설문원, “국제표준 기록물 전거제어 규칙 연구.” 지식처리연구, 제2권, 제2호(2001. 12), pp.85-106.
- Doherty, Teresa. “Who, What, When, Why? ISAAR(CPF) - the Forgotten Standard?” Business Archives Council and Contributors, Vol.87(2004). pp.61-75.
- ICA Home page, <<http://www.ica.org/biblio/ISAAR2EN.pdf>> [cited 2006. 12. 27].
-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ISAAR(CPF) :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Authority Record for Corporate Bodies, Personal and Families*. Ottawa : The Secretariat of the ICA Ad Hoc Commission on Descriptive Standards, 1996.
- Miller, Fredric M. *Arranging and Describing Archives and Manuscripts*. Chicago :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1990.
- Stefano Vitali. The Second Edition of ISAAR(CPF) and Authority Systems for Archival Descriptive Systems, <http://www.unifi.it/universita/biblioteche/ac/relazioni/vitali_eng.pdf> [cited 2007. 2. 1].
- Tillett, Barbara B. *Considerations for Authority Control in the Online Environment*. New York : The Haworth Press, 1989.